

이천시 조례 중 중앙행정기관 명칭 등 일괄정비조례

소관부서 : 감사법무담당관

제정 2014. 4. 10 조례 제1028호

제1조(「이천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의 개정) 이천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4항 중 “행정안전부”를 “안전행정부”로 한다.

제2조(「이천시 지방재정 투·융자사업 심사 조례」의 개정) 이천시 지방재정 투·융자사업 심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2항제3호 중 “행정안전부장관”을 “안전행정부장관”으로 한다.

제3조(「이천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의 개정) 이천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8조제4항 중 “행정안전부장관”을 “안전행정부장관”으로 하고, 제19조 중 “행정안전부장관”을 “안전행정부장관”으로 한다.

제4조(「이천시 지역정보화 조례」의 개정) 이천시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5항 중 “행정안전부장관”을 “안전행정부장관”으로 하고, 제14조제1항 중 “행정안전부장관”을 “안전행정부장관”으로 하며, 제20조 중 “행정안전부장관”을 “안전행정부장관”으로 한다.

제5조(「이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」의 개정) 이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2조제2항 중 “행정안전부령”을 “안전행정부령”으로 한다.

제6조(「이천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」의 개정) 이천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4조제2항 중 “행정자치부”를 “안전행정부”로 하고, 제26조제2호 “행정자치부”를 “안전행정부”로 하며, 제27조제2항 중 “행정자치부”를 “안전행정부”로 하고, 제28조제1항 및 제3항 중 “행정자치부”를 각각 “안전행정부”로 한다.

제7조(「이천시 시세 기본 조례」의 개정) 이천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

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8조제1항 중 “행정안전부령”을 “안전행정부령”으로 한다.

제8조(「이천시 여비 조례」의 개정) 이천시 여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 별표 1 국내여비 지급표 비고 1호 중 “행정안전부장관”을 “안전행정부장관”으로 하고, 2호 중 “국토해양부장관”을 각각 “국토교통부장관”으로 하며, 제5조제3호 중 “행정안전부장관”을 “안전행정부장관”으로 하고, 제7호 중 “행정안전부장관”을 각각 “안전행정부장관”으로 한다.

제9조(「이천시 평생학습 조례」의 개정) 이천시 평생학습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1항 중 “교육과학기술부”를 “교육부”로 한다.

제10조(「이천시 청소년육성위원회 운영 조례」의 개정) 이천시 청소년육성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2항 중 “노동부지방사무소”를 “고용노동부지방사무소”로 한다.

제11조(「이천시 사회적기업 육성 조례」의 개정) 이천시 사회적기업 육성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1조제2항제5호 중 “노동부”를 “고용노동부”로 한다.

제12조(「이천시 설계자문위원회 운영 조례」의 개정) 이천시 설계자문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3항 중 “국토해양부”를 “국토교통부”로 한다.

제13조(「이천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」의 개정) 이천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2항에 따른 별표 2 도로굴착 및 복구공사 시 이행사항 7호 중 “국토해양부”를 “국토교통부”로 한다.

제14조(「이천시 도로점용료 등의 부과·징수에 관한 조례」의 개정) 이천시 도로점용료 등의 부과·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제1항제2호 및 제3호 중 “국토해양부령”을 각각 “국토교통부령”으로 하고, 제8조제1항 중 “국토해양부령”을 “국토교통부령”으로 한다.

제15조(「이천시 소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」의 개정) 이천시 소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 1 점용료등 산정기준표 4호가목 중 “건설교통부장관”을 “국토교통부장관”으로 한다.

제16조(「이천시 도시계획 조례」의 개정) 이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 중 “국토해양부장관”을 “국토교통부장관”으로 하고, 제9조 중 “국토해양부장관”을 “국토교통부장관”으로 한다.

제17조(「이천시 건축 조례」의 개정) 이천시 건축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4조제2항 중 “과학기술부장관”을 “미래창조과학부장관”으로 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